

프랑스의 교정행정 관련 법제

신청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I. 서론

프랑스 교정법에서 교도소의 역할은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범죄자의 재발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슬람계 수용자의 증가, 할랄 급식, 수용자에 대한 근로권 부여 논쟁, 자살률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교정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프랑스 교정행정의 실태와 함께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정 체계 및 현황

1. 교정 체계

프랑스의 교정행정은 법무부장관의 관할로 교정국(Direction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5개 국(Direction) 중 한 부서이다. 교정국장은 프랑

스 전역의 9개 교정지부 및 해외지부 1개를 관장한다.¹⁾ 프랑스는 2016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188개소의 교도소 및 103개소의 교정 및 보호관찰 통합시설(SPIP)을 운영하고 있다. 교정국에는 보안요원, 전자감시 모니터 요원 27,000여명, 보호관찰관 5,000여명을 포함하여 모두 38,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²⁾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치소(remand prisons, maisons d'arrêt)는 범죄자에 대한 임시구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 ② 중기형 교도소(detention centers, centres de détention)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기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 ③ 장기형 교도소(maisons centrales)는 10년 이상의 장기형 수형자들을 수용하는 중구금 교도소를 말한다.
- ④ 개방형 교도소(centres de semi-liberté)는 개방처우 교정시설로서 수형자들은 낮 시간에는 각 자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고 밤 시간대에만 교도소에 수용된다.
- ⑤ 소년 교도소(juvenile facilities, Etablissement pénitentiaire pour mineurs)는 교정국과 청소년보호국이 함께 관장한다. 프랑스 형법상 형사상 책임능력자인 13세 이상부터 18세까지 소년범이 수용된다.
- ⑥ 복합 교도소(centres pénitentiaires)는 구치소와 중기형교도소, 그리고 장기형 교도소나 개방 교도소 등을 한 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³⁾

1)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direction-de-ladministration-penitentiaire-10025/>(2016. 10. 30 검색).

2) Prisoners Abroad, Prisoners Abroad: France – General prison information, <http://www.prisonersabroad.org.uk/uploads/documents/countries/France%20-%20general%20prison%20information%20v4.3.pdf/>(2016. 10. 30 검색); 허경미,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교정연구, 2014, (64): 5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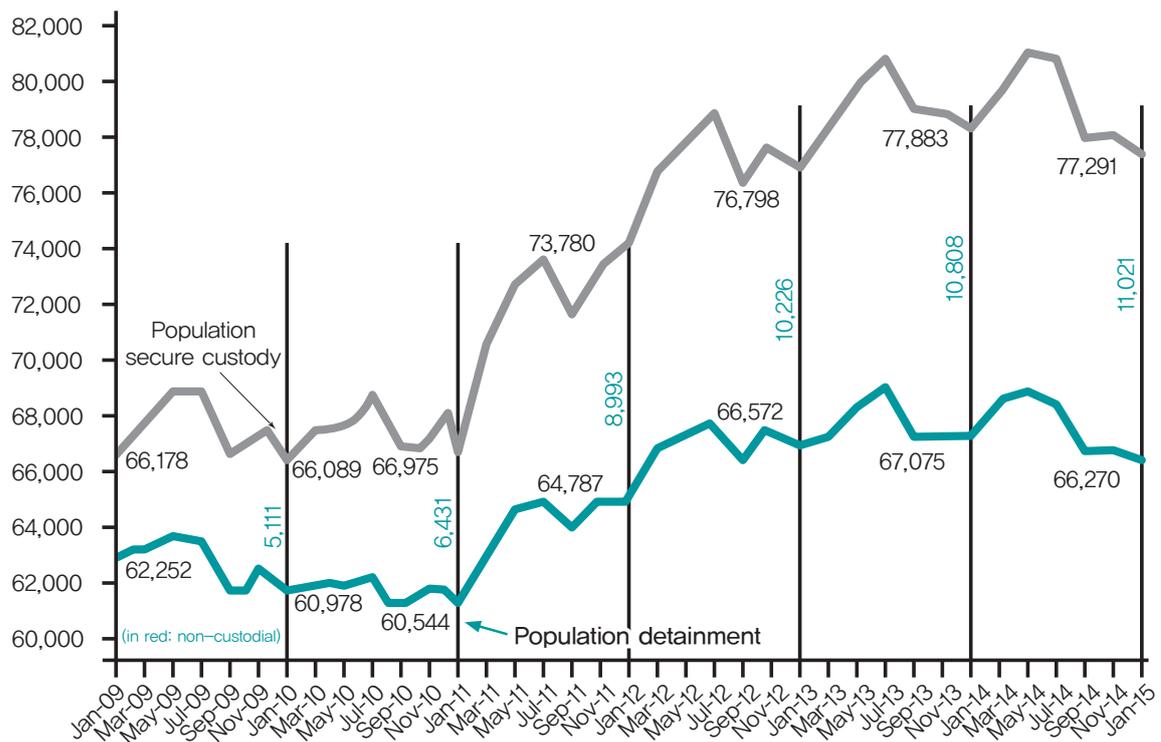
3) Lila Kazenmian and Catin Andersson, The French Prison System, <http://johnjayresearch.org/wp-content/uploads/2012/06/rec20121.pdf/>(2016. 10. 30 검색).

2. 수용인구 현황

프랑스는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모두 249,298명이 교정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관찰 등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2,007명은 보호관찰 서비스 대상이었으며, 교정시설 수용인구는 77,29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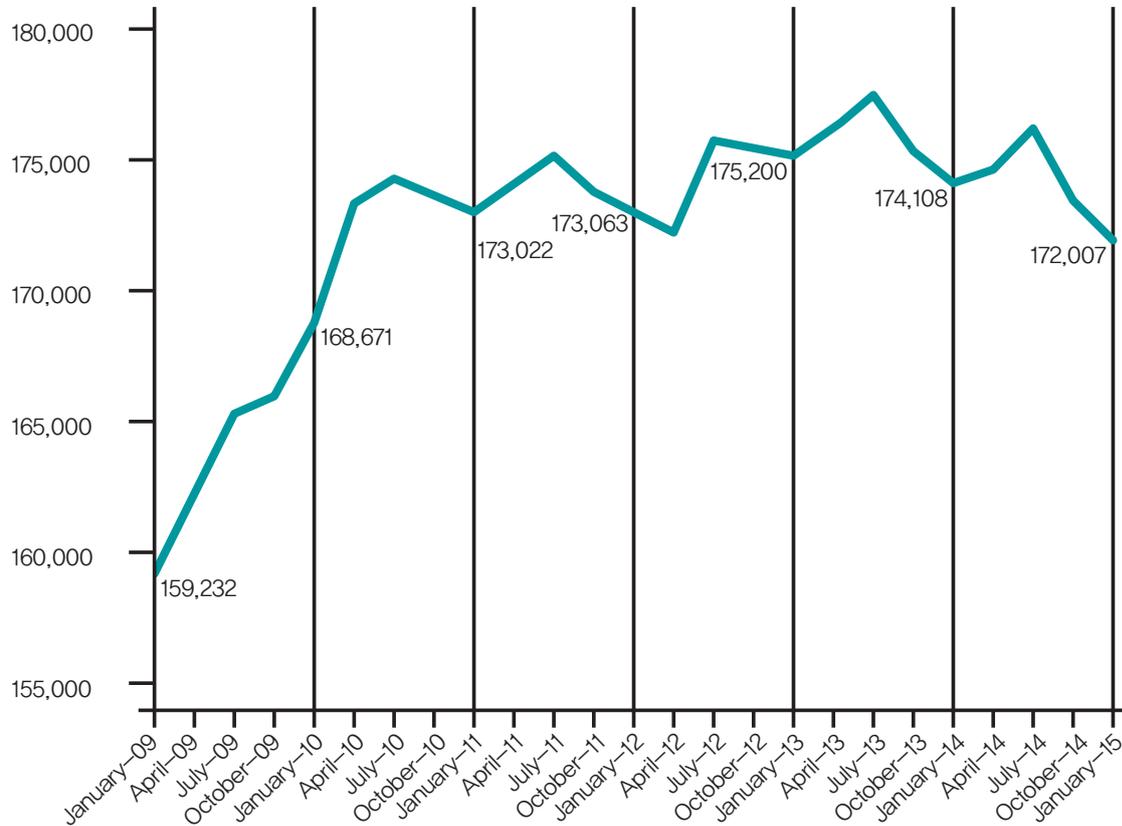
〈그림 1〉은 2009년 이후 2015년 1월까지 프랑스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현황을 보여준다. 수용인구는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매 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교정시설 수용현황(2009-2015)



출처: Directorate of Prison Administration, Key Figures prison administration, Fraternity, Ministère de la Justice, Paris. 2015, p. 5.

〈그림 2〉 보호관찰 대상 현황(2009-2015)



출처: Directorate of Prison Administration, Key Figures prison administration, Fraternity, Ministère de la Justice, Paris. 2015, p. 8.

실제로 프랑스 인구 십만 명 당 수용비는 2000년 82명에서 2006년 91명, 2011년 99명, 2014년 11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강화된 형사법으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정책 등의 결과로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자의 높은 자살률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II. 교정 및 보호관찰 관련 법제의 변화

1. 교정 관련 법제의 변화

프랑스 교정은 1791년에 제정된 형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⁴⁾ 형법에서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능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시키는 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정의 기능과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⁵⁾

1819년에 루이 18세는 「교도소 개혁을 위한 왕립협회」(Royal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Prisons)를 발족시켰으며, 1875년에는 범죄인의 개별수용이 허용되었고, 이를 위한 상업적인 회사가 1877년에 설립되었다. 1885년에는 가석방제(Parole)가 도입되었으며, 1891년에는 조건부 징역제(Conditional Imprisonment)가 도입되었다.

1911년에는 교정행정이 기존의 내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1945년에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제가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재소자에게 형벌과 함께 노역의 의무 및 권리가 인정되었다.

1958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벌집행법원(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JAP)과 보호관찰위원회(Probation Committees)가, 그리고 1959년에는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1972년에는 선행자에 대한 형의 감경제가 도입되었으며, 1975년에는 형집행의 대안 및 재활을 지향하는 구금센터(Detention Centres)가 설치되었다. 1981년에는 사형제가 폐지되었고, 1983년에는 사회봉사명령제(Penalty of Community Service)가 도입되었다.

1987년에는 드디어 「교정법」(French Prison Law 1987)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범죄자에 대한 모든 교정 및 보호관찰 등의 재통합 활동을 실시하는 교정서비스(SPIP)제가 도입되었다.

4) Penal Code of 1791.

5) Marie Crétenot, Barbara Liaras, Prison conditions in France, <https://www.crimeandjustice.org.uk/sites/crimeandjustice.org.uk/files/Prison%20conditions%20in%20France.pdf> (2016. 10. 30 검색); VIP-PROJECT, The French prison system, vip-project.tk/sites/default/.../French%20prison%20overview.pdf (2016. 10. 30 검색).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의회는 교정행정협약을 체결하였고, 프랑스는 2008년에 「예방구금에 관한 법률」(Act on Preventive Detention)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교정법(French Prison Law 2009)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은 수형자의 작업권(노동권)을 보장하고, 수형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 하였다.⁶⁾

2. 보호관찰 관련 법제의 변화

프랑스의 보호관찰제도는 1819년 국왕칙령(Royal Decree of 1819)부터 출발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1869년 종교단체 등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명령제를 도입하면서부터이다. 이는 프랑스의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민간분야(Private Sector)에 위탁하면서 그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후 상원의원이었던 René Bérenger가 1882년에 「재활과 용서를 위한 자선법」(A Charitable Law of Rehabilitation and Pardon)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1885년 8월 14일 의회를 통과하였다.⁸⁾

한편 1901년에 프랑스는 「협회활동자유법」(Freedom of Associ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시민들이 민간협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나 자원봉사 활동, 공공행정에의 기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

교정분야에서도 자원봉사방식으로 민간협회가 범죄자에 대한 직업훈련, 피해자 지원, 출소자갱생, 형사조정 등의 보호관찰 등을 무보수로 지원하였다.¹⁰⁾ 1911년 3

6) Section 33 of the Prisons Act of 24 November 2009.

7) 허경미,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교정연구, 2015, (66): 33~55.

8) Bruno Pelissier, Yves Perrier, Chapter 12 France – CEP Probation, [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2016. 10. 30 검색).

9) Bernardeau–Moreau D and Hély M (2007) Transformations et inerties du bénévolat associatif sur la période 1982–2002. Sociologies Pratiques 2(15): 9~23.

10) Martine Herzog–Evans, French third sector participation in probation and reentry: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2014, Vol. 6(1): 42~56.

월 13일부터 교정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1912년에는 청소년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민간협회가 담당하였다. 이는 1945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1945년에 교정국장으로 임명된 Paul Amor는 교정개혁의 일환으로 교도소 마다 사회사업관(Social Service)¹¹⁾을 배치하였다. 사회사업관의 업무는 수형자의 가석방 및 석방 후 보호관찰을 준비하고, 민간부문의 관련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 민간분야의 보호관찰 사무를 공적인 영역(public sector)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6년에 각 법원에 보호관찰 및 지원위원회(Comité de Probation et d'Assistance aux Libérés: CPAL)가 설치되어 조건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후 보호관찰 조직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195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 산하에 집행유예과(Sursis avec Mise à l'preuve: SME)를 설치하였고, 형벌집행법원(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JAP)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과(SME)가, 조건부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형벌집행법원(JAP) 하의 보호관찰지원위원회(CPAL)가 담당하였다.¹²⁾

한편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이르면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신범죄예방정책(nouvelle prevention: NP)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작업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민간 및 공공영역,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협력과 업무조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지역사회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른바, 'Bonnemaïson Report'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¹³⁾ 이에 따라 프랑스 역시 형사사법개혁 작업이 가속화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사회사업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의 출소 이후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 및 사업 등을 행하였고, 이들이 결국 재할 및 보호관찰관으로 변천되기는 하나, 보호관찰관으로 이 때부터 지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2) Ioan Durnescu, The future of probation in Europe: Common in the middle and diverse at the edge, Probation Journal September 2013, 60: 316~324; 백원기, "프랑스 형법학의 발달과 그 동향-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에서 현재까지-", 형사법연구, 1989, (2): 127~146.

13) Gilbert Bonnemaïson는 셴 - 생 드니의 시장이었으며, 1982년에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보고서, 1982」(Le rapport de la Commission des Maires, 1982)를 통하여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교정 및 보호관찰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형사법 및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째, 형벌집행법원(JAP)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Act of 2 February 1981)이 1981년 2월 2일 통과되었다.

둘째, 1983년 6월 10일 지방분권화법(Decentralization acts, Act of 10 June 1983)이 통과되었다. 지방분권화법은 중앙정부와 지역, 자치단체 등이 범죄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형벌집행법원(JAP)의 보호관찰지원위원회(CPAL)의 역할을 조정하였다. 즉, 보호관찰지원위원회(CPAL)가 수감명령, 양형조사, 긴급신원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한 것이다.¹⁴⁾

이어서 1987년 6월 2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Act of 22 June 1987)은 수용자의 재사회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별처우제의 도입과 CPAL의 구조를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1995년 1월 6일 개정 형사소송법(Act of 6 January 1995)은 교도소의 사회사업관 수를 두 배로 증원시켜 보호관찰 사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에는 CPAL과 SME가 병합되어 재활 및 보호관찰 교정 서비스(Rehabilitation and Probation Prison Servic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SPIP)로 독립하여 교정국장의 감독으로 소속되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형벌집행법원과 형벌집행관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및 보호관찰사무 등을 지휘감독토록 하였다.¹⁵⁾

3. 최근 형사법의 개정과 교정정책의 변화

프랑스는 재범률 억제의 실패와 교도소 과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을 계속 진행하였다.

14) Bruno Pelissier, Yves Perrier, Chapter 12 France – CEP Probation, [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2016. 10. 30 검색).

15) 법무부는 형벌적용법원과 형벌집행법원 그리고 형벌적용관사와 형벌집행관사 등을 혼용하고 있으나, 프랑스 형사제도의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형벌집행법원 및 형벌집행관사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491~492.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형법 개정을 심의하여 같은 해 6월 3일에 의회를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8월 15일에 정부가 서명하였다(Loi No. 2014-896 du 15 août 2014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¹⁶⁾

이 가운데 교정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범죄자에 대한 단기구금형을 폐지하고, 개방처우시설에서 재활 및 사회화 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개별처우제를 도입하였다(Loi No. 2014-896, arts. 7~17).

둘째, 보호관찰의 조건과 대상 그리고 의무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Loi No. 2014-896, arts. 19~23.) 즉, 보호관찰의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절도죄, 손괴죄, 모욕죄, 교통법규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7년까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모든 범죄자에게도 유예기간 없이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JAP는 출소수용자에 대해 특정장소 출입금지 및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가하거나, 수감명령, 치료명령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JAP는 대상자가 보호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보호관찰을 중지하고, 구금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Conditional Release)를 도입하였다.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반드시 JAP의 면담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JAP는 조건부 석방 혹은 계속수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자는 잔여 형기를 개방교도소에서 야간에만 수용 생활을 하고, 주간에는 SPIP의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작업이 면제된다(Loi No. 2014-896, arts. 39~48.).

16) Government France, The penal reform, <http://www.gouvernement.fr/en/the-penal-reform/>(2016. 10. 30 검색).

17) The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Monitor,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major-reform-of-penal-code/>(2016. 10. 30 검색).

넷째, 2012년 개정 형법은 JAP가 사전양형조사 및 성격검사, 법원감시석방, 법원 재판대기자감시 등을 민간협회(Association)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⁸⁾

다섯째, 프랑스는 2017년까지 SPIP의 인력을 25% 증원하여 모두 1,000여명을 증원하고, JAP 및 검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 JAP를 30명 증원하였고, 검사를 19명 증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법원 서기 40명과 JAP 10명을 더 증원하였다. 또한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교도소 거실을 6,500개 정도 더 확충할 계획이며, 2013년에 530개, 2014년에 1,200개를 확충하였다.¹⁹⁾

IV. 교정행정의 시사점 및 결론

1. 보호관찰과 교정조직의 통합과 업무의 효율화

프랑스는 보호관찰 사무를 1999년 교정국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교정사무와 보호관찰의 연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수행자 처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²⁰⁾

〈표 1〉은 프랑스의 형사사법 단계별 업무와 각각의 기관들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²¹⁾

18) 프랑스의 재활 및 보호관찰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federations)는 시민의식과 정의(citizens and justice, Federations Citoyen et Justice), 범죄자지원, 치료, 재활을 위한 전국연맹(the 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Accueil et de Réinsertion Sociale, National Federation of support, care and social rehabilitation associations: FNARS), 약물치료연맹(the Federation Addictions), 형사사법행정분석 및 행동연맹(Federation des Association Réflexion Action Prison et Justice, Federation of Analysis and Action for Prison and Justice Associations: FARAPEJ) 등 네 개이다.

19) 프랑스의 개정형법은 피해자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형사절차과정상 피해자의 정보요구권, 법원청문회, 배상,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정책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지원단체에 10% 정도의 예산증액과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지방법원에 victim support offices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미 2013년에 100개소를 개설하였다(Loi No. arts. 18, 26, & 27.)

20) 허경미,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교정연구, 2015, (66): 33~55.

21)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12-1조 - 제712-10조, 제763-1조 - 제763-9조 참조.

〈표 1〉 프랑스의 형사사법 단계별 각 기관의 역할

업 무	요청/지시기관	수행기관	형집행 전	형집행 후
양형위원회/긴급개인배경조사	검사	SPIP or Association	√	
성격검사(Personality enquiry)	검사, 예심판사	SPIP or Association	√	
전자감시 타당성 조사	JAP	SPIP		√
법원감시석방	예심판사	SPIP or Association/ 경찰/헌병대	√	
형사조정	검찰	SPIP or 검찰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JAP	SPIP	√	
보호관찰부 형집행중지	JAP	SPIP		√
형집행위원회	JAP	SPIP/교도소/검사		√
출입금지명령	JAP	SPIP		√
수강명령	JAP	SPIP		√
입시석방	JAP	SPIP/교도소		√
조건부 석방	JAP	SPIP/교도소		√
외부노역	JAP	SPIP		√
전자감시	JAP	SPIP		√
사회사법감시	JAP	SPIP		√
유죄확정자 감시보고	JAP, 검찰, 예심판사, 판사	SPIP		√
재판대기자 감시보고	검사, 예심판사	SPIP or Association		√
수용자, 거부수용자, 유죄확정자 배정 및 이송	교정국장 (Prison Governor)	SPIP	√	√
의견 및 서면보고서	법원, 교도소	SPIP	√	√

출처: Bruno Pelissier, Yves Perrier, Chapter 12 France – CEP Probation, [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 재구성(2016. 10. 30 검색).

이와 같은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조직과 보호조직의 이원화, 검사의 교정 사무와 보호관찰 사무의 관할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검찰의 지휘 하에 속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사사법체계라 할 수 있다. 범죄자의 재범억제와 효과적인 사회화를 위해서 어떠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2. 형벌집행법원 및 판사제의 도입

프랑스는 수형자에 대한 형벌 집행과 보호처분 등을 형벌집행법원 및 형벌집행판사 하에 두고, 교정 및 보호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구조가 범죄자의 재범 억제 및 사회복귀에 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현행 한국의 관련 구조의 진단도 필요하다.

3. 수용자의 노역의무와 작업권의 충돌

2009년 개정된 교정법에 의하여 프랑스 노동법원은 2013년 2월 8일 교도소 수용자는 작업을 하는 동안 노동법상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²⁾

이는 수용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해 거의 논의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진일보한 수용자 권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노동권 반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프랑스처럼 수용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수용자의 작업을 처벌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인가?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22) 이 판결은 한 수용자에 대한 외부회사의 해고가 불공정한 행위라며 해고 수용자에게 밀린 임금 300 유로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수용자의 노동은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다("the labor relations of prisoners are not subject to an employment contract.")라고 규정하고 있다(Article 717-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이에 대하여 EU수형자규정(European prison regulation)은 수용자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obert Myles, Landmark case establishes workers' rights for prisoners in France, <http://www.digitaljournal.com/article/343132/>(2016. 10. 30 검색).

4. 민간영역의 활용과 경쟁

프랑스는 민간협회가 재판대상자에 대한 사전양형조사나 성격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협회의 활동들이 범죄자의 양형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과연 형사사법 업무를 일반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²³⁾ 그러나 보호관찰관 못지않게 협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호관찰관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교정이나 보호관찰 영역의 민영화 혹은 민간에의 개방이나 위탁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재범억제 및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허 경 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3) Martine Herzog-Evans, French third sector participation in probation and reentry: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2014, Vol. 6(1); 42~56.

참고문헌

- 백원기, “프랑스 형법학의 발달과 그 동향-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에서 현재까지-”, 형사법연구, 1989, (2): 127-146.
-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 허경미,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교정연구, 2014, (64): 59~86.
- 허경미,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교정연구, 2015, (66): 33~55.
- Bernardeau-Moreau D and Hély M (2007) Transformations et inerties du bénévolat associatif sur la période 1982~2002, Sociologies Pratiques 2(15): 9~23.
- Bruno Pelissier, Yves Perrier, Chapter 12 France – CEP Probation, [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http://www.cepprobation.org/uploaded_files/France(1).pdf/)(2016. 10. 30 검색).
- Directorate of Prison Administration, Key Figures prison administration, Fraternity, Ministère de la Justice, Paris. 2015.
- Government France, The penal reform, <http://www.gouvernement.fr/en/the-penal-reform/>(2016. 10. 30 검색).
- Ioan Durnescu, The future of probation in Europe: Common in the middle and diverse at the edge, Probation Journal, September 2013, 60: 316~324.
- Ministry of Justice, Prison structures,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en&sl=fr&u=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direction-de-ladministration-penitentiaire-10025/&prev=search/>(2016. 10. 30 검색).
- Marie Crétenot, Barbara Liaras, Prison conditions in France, <https://www.crimeandjustice.org.uk/sites/crimeandjustice.org.uk/files/Prison%20conditions%20in%20France.pdf/>(2016. 10. 30 검색).
- Martine Herzog-Evans, French third sector participation in probation and reentry: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2014, Vol. 6(1): 42~56.
- Prisoners Abroad, Prisoners Abroad: France – General prison information, <http://www.prisonersabroad.org.uk/uploads/documents/countries/France%20-%20general%20prison%20information%20v4.3.pdf/>(2016. 10. 30 검색).
- Robert Myles, Landmark case establishes workers’ rights for prisoners in France, <http://www.digitaljournal.com/article/343132/>(2016. 10. 30 검색).
- The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Monitor,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major-reform-of-penal-code/>(2016. 10. 30 검색).
- VIP-PROJECT, The French prison system, vip-project.tk/sites/default/.../French%20prison%20overview.pdf/(2016. 10. 30 검색).